

설계자	확인자	설계년월일	2021.02. .
황 인 덕	고 준 석		

우간다 캄팔라~진자 고속도로 PPP사업  
본타당성조사

# 과 업 지 시 서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 목 차

I. 과업지시서.....	1
1. 개요.....	1
2. 과업기간.....	2
3. 과업내용.....	2
4. 과업의 일반원칙.....	7
5. 과업수행 방법.....	10
6. 과업성과품 제출.....	11
7. 보안대책.....	12
II. 예정공정표.....	14

# I. 과업지시서

## 1. 개 요

□ 과업명 : 우간다 캄팔라~진자 고속도로 PPP사업 본타당성조사

### □ 과업목적

- 우간다는 2000년대 들어서 아프리카에서 가장 빠르게 빈곤퇴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로, Vision 2040 및 국가개발계획(NDP, National Development Plan)을 통한 농업중심 국가경제시스템의 현대화 추진중에 있음
- 케냐 몼바사 항구와 동아프리카 내륙국가의 물류이동 중심인 본 노선은 현재 왕복 2차로의 국도구간으로 운영중에 있으며, 30,000 ~ 67,000대의 일평균 교통량(일방향)이 통행중으로, 교통지정체로 출퇴근시간에는 최대 3시간까지 소요되며, 교통사고율도 높아 매년 200명이상 사망
- 따라서 우간다 정부는 국가개발 목표달성을 위해 본 사업을 Vision 2040, 하위 NDPⅡ단계, 국가 교통마스터플랜(National Transport Master Plan, 2008 - 2023), 광역캄팔라 마스터플랜(Greater Kampala Metropolitan Area Master Plan)에 핵심사업으로 포함하여 추진하고 있음
- 2018년 5월 사전입찰자격(P.Q) 공고 및 2018년 9월 총 8개의 컨소시움이 P.Q를 제출하였으며, 이후 한국과 중국 컨소시움을 포함한 총 4개의 컨소시움이 2018년 12월에 총 숏리스트로 선정된바 있음.
- 본 용역은 2021년 하반기 제안서 제출을 앞두고 있는 우간다 캄팔라~진자 고속도로 PPP사업의 본타당성 검토를 위한 투자환경, 사업여건, 기술분석, 법률·제도 및 재무조건 등을 조사하여 투자 타당성을 검증하고 위험요인의 도출 및 분석과 그 위험의 헷지 또는 완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현재 Lot1구간이(53km) 발주되었으며, Lot2(42km)구간은 별도발주 또는 통합 발주를 발주처에서 고려하고 있으나, 통합발주 가능성이 높은바 전체 95km에 대한 검토 필요

2.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50일

### 3. 과업내용

#### □ 사업여건 분석

- 사업개요 : 사업추진 배경, 사업개요, 사업추진 현황, 사업구조 분석 및 개선방안
- 기초 자료수집
  - 사업 대상국 및 지역의 인구, 주요 도시, 문화, 기후 등 전반적 현황 조사
  - 사업 대상국의 외채 등 채무현황, 위험관련 사항
  - 사업 대상국의 국가 관련기관 등을 통해 과업 대상사업과 관련된 산업관련 주요경제지표, 주요 산업정책 등 자료수집 및 분석
  - 사업 대상국의 도로인프라 개발계획과 도로 인프라 현황·계획 조사
  - 사업 대상국의 도로인프라 시설규모 및 시설수준 통계자료 수집·분석
  - 사업 대상국의 PPP 사업 등 외국 투자사업 관련 정부예산 지급현황, 미지급 사례, 지급기준 등 조사
  - 사업 대상국의 PPP 사업 전담부서 및 추진사례 조사
  - 사업노선의 주요 도시·지역의 사회적·경제적 현황 조사
  - 타당성 분석을 위한 관련 법령·제도, 자료, 문서, 세금 등
  - 사업노선의 주요 도시·지역의 사회적·경제적 현황 조사
  - 사업구간 도로상태 등 조사
  - PQ 통과 경쟁사 주요 PPP 사업 수행 실적 분석 및 아국 컨소시엄 장단점 비교

#### □ 기술분야 사업타당성 분석

- 기초자료 수집
  - 사업 대상국 도로 등급별 관리체계
  - 설계, 건설 및 관리기준 등 관련자료 수집 및 검토
  - 공사비 및 운영비 산출 기초자료 수집(운영매뉴얼, 조직, 기초단가 등)
  - 주요시설물 적용공법의 정책 및 기술동향
  - 지질도, 지형도, 지질자료, 지반자료

- 사업계획 및 건설부문 조사 및 분석
  - 사업지역의 토지확보, 민원, 환경 및 기상조건 등 공사시행여건 검토
  - 지반특성을 고려한 적정 노반, 교량, 터널 공법 검토
- 발주처가 제시한 건설비용의 적정성 여부 검토
  - 공정계획(전체 공사기간, 구간별 공사기간 최적화) 검토
  - 설계비, 공사비, 감리비 등의 적정 금액 검토
  - 도로 선형, 지장물, 지질조사 및 환경영향평가 자료 검토
  - 토지보상관련 보상주체(기관별 리스크 분담), 비용적정성(사업비 반영여부) 등
  - 공사수행여건을 고려한 공정계획 검토(최적공사비, 공사수행방안 등)
- 주요시설물 재료원 및 수급성 조사와 최적대안 제시
- 사업의 발주처가 제시하는 선형, 시설물계획 및 진출입계획 등의 적정성 검토와 최적대안 제시
- 운영유지관리부문의 조사 및 분석
  - AP와 관련된 Performance Criteria
  - 유사도로 사업(MDB 참여 사업 등) AP와 관련된 Performance Criteria 사례조사
  - 운영·유지관리 소요예산비용 공동산출 (산출주관 : 사업주)
  - 발주처 운영비용 분석자료 및 관리기준 자료 수집
    - 운영조직·예산, 주요 유지관리 장비(대수, 비용, 보험료), 종사자 인건비 등
    - 전기세, 수도비, 통신료 등 공과금
  - 유료도로 운영현황 조사, 관리체계 및 시스템 조사
    - 통행료 수납 및 교통관리 등 시스템 도입·운영현황
    - 유료도로 재난, 긴급구난 시스템 등
    - 통행료 물가변동 반영 여부, 반영 시기 및 방법 등
  - 주요 장비 및 관리시스템 등 적용기준(내구년한 등) 현황 조사
  - 기존도로 운영조직·운영비 등 조사
  - 운영유지관리 하도급 관련 기업조사 및 도급현황 등 조사
- 교통수요 관련계획 수집 및 분석
  - 교통시설 계획, 인구, 차량대수 및 향후 전망자료
  - 교통여건 조사 및 답사
    - 교통관련 현황과약을 통한 차종별 분담비율

- 사업지역 도로망, 도로이용, 토지이용 등 교통관련 현황 조사 및 확인 등
- 교통수요와 관련된 장래계획 조사
- 해당 계획지역의 도로 등 교통인프라 관련된 장래 개발계획 등
- 사업부지내 장래 주요 토지이용계획 등
- 노선 경유지의 산업 및 수출 등 경제지구 지정현황 및 계획조사
- 사업 발주처가 제시하는 장래교통량의 적정여부 판단

○ 환경영향검토

- 정부수행 환경영향평가 결과 및 MDB 환경영향평가 기준으로 수행 시 결과 (예측)의 Gap Analysis 수행
- Gap 발생 시 이에 대한 대책, Risk 경감 방안 및 관련 비용 제시
- MDB 환경기준 충족을 위한 추가 공사비 및 E&S 관련 비용 제시
- MDB E&S Policy 기준으로 산정한 토지 보상 가격의 적정성 검토
- MDB 요구 Affected Persons의 Resettlement 지원 규모 및 비용 규모 파악
- 이주 진행 현황 및 완료 일정 파악 (배정예산 현황 포함)
- MDB 및 Local Standards로 공사 기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구간 및 공사 가능 일수 비교제시

□ 재무분야 사업타당성 분석

- 발주처에서 수행한 사업성 검토자료 등에 대한 파악 및 주요 내용 분석
- 아프리카지역 유사사업 재원조달사례 및 재원조달 관련 보증방안 등 분석
  - 환헛지상품, 통화스왑 등 상품계약조건, 만기 등 조사
  - 유사사업 재원조달 관련 금융조건 분석, 부채비율, 실제(예상) 수익률 검토
  - 유사사업 사례조사를 통한 본사업 적정 재원조달방안 수립 및 예상수익률 분석
  - \* 아프리카지역 유사사업 부재시 MDB 참여사업 등 타 사업 사례조사
- 자기자본, 타인자본 등 자금조달의 적정성 검토
  - 우간다정부 재원확보계획과 다자개발은행(AfDB, AFD, IFC 등), 해당국 국책 및 시중은행, 국내 ECA(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등 참여의향 및 예상금리 조사
  - 정부 (재무부 및 도로청) AP 지급 의지 및 프로세스상 가능여부
  - 투자계획의 실현가능성, 투자자의 신뢰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 및 분석

- 본 사업의 적정 부채비율 제시
- 사업주체 분석
  - SPC 설립 구조, 절차의 적정성 및 SPC 출자자의 출자가능성 검토
  - 시공사, 운영사, 발주처 등 사업 관련자의 신용도 검토
- 재무적 타당성 분석(Lot1 및 Lot2구간 통합발주 및 순차발주시 각각분리)
  - 우간다 정부지급금 현재가치 분석
  - SPC 추정재무제표 작성, 주주 참여사별 현금흐름 분석
  - 수익성지표 분석(NPV, ROE, ROI, 회수기간)
  - 안정성지표 분석(DSCR, 현금과부족 발생여부)
  - 타인자본 조달방식 및 차입조건 상세화
  - 현지 및 외국자본의 자금조달 시나리오 분석
  - 주요 변수에 대한 민감도 분석
- 재무모델 작성(Lot1 및 Lot2구간 통합발주 및 순차발주시 각각분리)
  - 현지 관련규정 및 유사사례 조사
  - 현지 법인세, 개인소득세, 원천과세, 부가세 등 본 사업 관련 주요 세제 반영
  - 면세대상(건설비, 운영유지비, 사업관리비, 통행료, AP 등) 세부사항 반영
  - 타당성 조사 결과를 반영한 최종 재무모델 작성
  - 민감도 분석

#### □ 법률분야 사업타당성 분석

- PPP 관련법, 외국인투자법 등 투자관련 법률 검토
  - PPP 관련법, 기준 및 지침 등 관련제도
  - 외국인 투자에 대한 우대 및 규제정책(세제, 금융상 혜택 및 제한, 종업원에 대한 이익배당, 현지인 채용, 고용제한 등)
  - 배당금, 자본금 등의 보호 및 환전, 송금 등의 제한
  - 분쟁조정 절차 및 체계
  - 국제협약\* 체결 여부와 해당 협약 또는 관련 현지법규/제도 내용/이행
- \* 국제협약은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에 관한 유엔협약(뉴욕협약)', '국가와 타국민간 투자분쟁의 해결에 관한 협약(ICSID 협약)' 및 한국과 우간다간 체

- 결된 Bilateral Investment Treaty/Double Tax Treaty
  - 외국인 투자자와 분쟁 사례 (불법수용 등) / 외국중재판정 무효 / 승인 집행 관련 사례
  - 국가/주권 면제(Sovereign Immunity)에 대한 법규 내용 및 관련 분쟁 사례
  - Concession Object에 대한 운영개시 또는 소유권 이전 절차/요건
  - 현지법인세, 개인소득세, 원천과세, 부가세 등 관련 조세
- 유료도로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도로등급 및 유료도로 관리에 관한 규정
  - 도로사업권과 관련된 법령·규정과 PPP법과의 법률관계
  - 통행료징수권과 관련된 법령·규정과 본 사업과의 관계
  - 도로손괴 관련 원인자부담금 등 관련규정
  - 도로 등 공익시설의 민간의 운영참여에 대한 규제사항 등
- SPC, EPC, O&M 법인설립 검토
  - 외국인 투자기업 설립형태 및 설립절차, 제반 인·허가 제반사항
  - 최소자본금 규정, 고용제한, 법인소득세율 등
  - 외국기업 EPC 및 O&M 법인, “Unincorporated JV(UJV)/Consortium의 설립·운영사례
  - UJV/Consortium 운영 시, 회계 또는 세무 관련 사항 및 공동명의 은행계좌 개설 등 확인
  - SPV 스폰서가 O&M JV 설립 후 O&M 전문업체 재하도 방안 및 실행 시 고려사항
  - 금융거래와 관련된 실무적 쟁점
- 고용 및 노동환경 등 조사
  - 노동력 수급사정, 임금 및 복지후생 수준 등 관련 규정
  - 외국인 취업제한 여부 및 노동조합 등 관련 규정
  - 사업추진/수행 인력이 취득하는 체류/취업비자 발급/유지요건
- 사업대상국 기존 도로투자사업에 대한 양허계약(부속서류 포함) 등 주요 계약 적정성 검토 및 법률적 위험요인 도출·분석
- 토지보상관련 관련법령 검토
  - KJE 사업 관련 토지 보상 적정성 검토

- 우간다 법제도 및 MDB의 계약적 요구사항 수용가능여부 검토
  - International Arbitration, Waiver of Immunity 적용가능여부
  - Lenders Direct Agreement 수용가능여부
    - \* 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Template / 체결 계약의 주요 조건 확인
  - 대주단의 Step-in 조항반영 가능여부 등
  - Concession Agreement Novation 관련 법규 내용 검토
    - \* 예) 경쟁입찰을 거쳐야 하는지 등에 대한 검토
- 대주단이 요구하는 보험 Policy/Agreement의 조항
  - \* 예) Non-Vitiation Provision 등의 유효한 합의/집행 가능성
- Sanction/Corruption Risk에 대한 검토

#### □ 위험요인 분석, 대응방안

- 각 사업단계 및 참여자 위험요소를 파악하고 회피방안 또는 대응방안 제시
  - 시행사 위험(인허가, SPC 설립 및 출자, 과실송금 등)
  - 시공사 위험(공사완공 지연, 기술위험, 부실시공 등)
  - 운영관리(운영수입/비용 변동) 위험
  - 사업비 초과 및 재원조달 위험
  - 금리, 물가 변동, 환율변동 위험
  - 불가항력 위험(정치, 전쟁, 재해, 계약 불이행, 몰수, 수용 등)

#### □ 기타사항

- 본 타당성조사 수행과 RFP 협의, 제안서 작성등 입찰이 동시에 진행될것으로 예상되는바, 과업수행 결과물이 입찰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국·영문보고서 작성 (최종보고서 및 최종 발표 PPT자료)

### 4. 과업의 일반원칙

#### □ 자료활용

- 시장조사와 관계문헌은 국내 기존자료는 물론 외국의 자료를 충분히 수

집하여 활용하여야 하며, 통계 등을 반영할 경우 공신력 있는 기관의 자료를 활용하여야 함

- 본 과업수행을 위해 공공기관, 전문연구기관의 보고서, 각종 행정통계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출처를 명시해야 함

#### □ 과업수행원칙

- 최종낙찰자(이하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상의 주요사항과 본 지침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감독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수행해야 함
- 본 과업수행 시 세부 추진일정 및 자료협조 등 관련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수행해야 함
- 본 과업의 수행상 시장조사, 법률, 기술, 수요 등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과업을 수행할 경우 위탁범위 및 내용, 위탁금액, 위탁의 필요성, 수탁자 선정의 적정성 등을 명시하여 우리 공사의 승인을 받아 시행해야 함
- 외부업무위탁을 수행하는 기관을 포함하여 과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안전사고의 책임 및 행정적·기술적 제비용과 문제처리는 과업수행자(계약상대자, 외부전문기관 포함)가 부담해야 함
- 과업수행자는 수행연구자별 세부 업무범위 등을 정하여 우리 공사와 협의를 통해 최종확정하여야 함

#### □ 과업의 변경

- 계약 후 과업지시서 및 설계예산내역서의 내용은 계약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 중 여건변화, 과업 내용의 추가 등으로 우리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업 범위 및 내용 등을 변경할 수 있음
- 본 과업에 대하여 부득이한 사유로 과업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는 우리 공사의 사전승인을 받아 연장할 수 있음

- 기타 과업지시서 및 설계예산내역서의 해석상 의문이나 문제가 있을 때는 당사자가 협의하기로 하며 협의가 안 될 시에는 관련 규정에 따름

#### □ 일반조건

- 과업진행에 대하여 우리 공사의 설명요구가 있을 때는 과업책임자와 책임연구원이 참석하여 과업내용을 설명하고 우리 공사의 수정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함
- 각 부문별 과업 항목은 각 세부항목별로 수행일정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승인을 받고 계획에 따라 추진해야 함
- 본 과업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제반자료와 정보에 대하여는 과업수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임의로 사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임의유출에 대한 손해배상 등의 제반책임은 과업수행자가 짐
- 과업수행 상 경비는 계약된 범위 내에서 사용하고 초과 사용하는 경우 과업수행자가 부담하며, 사용내역에 대한 집행근거(영수증 등)는 준공 시 제출하여 부당하게 지출되었다고 판단할 경우 그 금액에 대하여서는 사후에 감액 또는 환수할 수 있음
- 기타 과업의 일반지침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르되 주요사항은 우리 공사의 지시에 따라야 함

#### □ 특별조건

- 본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였을 경우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하며, 과업수행의 성과품은 우리 공사가 소유함
  - ※ 우리 공사는 과업수행자의 동의 없이 성과품을 사업주에게 제공할 수 있음
- 사전승인을 득한 연구인력으로 과업을 수행하며, 변경할 경우, 기존 인력보다 업무수행역량이 높은 자로 한정하며, 우리 공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 성과물 작성

- 사용되는 용어는 국문 및 영문으로 통일성 있게 작성하며, 전문용어는 ( ) 안에 한자 또는 영문으로 표기하며, 교육부제정 한글맞춤법 및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야 함
- 작성된 최종보고서 원안은 우리 공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에 필요한 자료제출 및 보충설명의 요구가 있을 때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그 결과 성과품이 과업지시서 내용과 상이 또는 미흡하여 우리 공사에서 보완을 요구할 경우에는 즉시 보완하여 계약기간 내에 인쇄·납품해야 함
- 성과품에 대한 작성방법, 양식, 활자크기, 지질 및 표지색 등에 대해서는 감독관과 협의·결정해야 함
- 공정보고, 현지조사,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등 과업수행자가 감독관에게 제출하는 모든 보고 및 관련자료는 서면과 전자파일로 제출해야 함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주로부터 <사업주 수행> 과업(해당 시)의 결과물을 제공받아 과업내용 전체를 아우르는 최종 성과물을 작성하여야 함. 이를 위한 세부 방안은 감독관 및 사업주와 협의하여 결정함

※ <사업주 수행> 과업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책임을 지고 수행

## □ 기 타

- 과업수행자는 우리 공사가 과업지시서의 범위 내에서 세부적으로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 이를 준수해야 함
- 용역성과보고서 등 관련문서는 보안관련 제 규정을 준수하여 사전에 보안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과업의 수행 중 발생한 각종 자료와 성과품을 용역 준공 시에 전부 납품하여야 하며, 성과품은 우리 공사의 승인 없이는 추가로 인쇄할 수 없음

## 5. 과업수행 방법

### □ 전문가 자문

- 본 과업내용 관련 기관의 실무책임자 또는 외부전문가 중에서 선정하여 중간보고서 제출 전, 최종보고서 제출 전 등 2회 이상 자문계획(자문회의, 토론회, 워크숍 등)을 수립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고 실시하여야 함

### □ 현지조사

- 사업대상국의 인문, 자연, 경제, 법률 및 사업환경 조사 등 내실 있는 과업수행을 위해 사업대상국 현지조사를 실시해야 함
- 과업수행자는 조사지역 및 일정, 조사자(과업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위탁 외부전문기관 포함) 등 해외조사계획을 감독관의 사전 승인을 받고 실시함
- 과업수행자는 해외조사 종료 후 7일 이내에 조사 관련 활동 내역 등 조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 □ 공정보고 및 추진현황 회의

- 매월 말 기준으로 과업의 추진상황을 작성하여 용역진도보고를 익월 5일 까지 제출해야 함

## 6. 과업성과품 제출

### □ 착수보고

-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계, 보안각서 및 기타 필요 서류를 첨부한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착수보고는 과업수행자가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과업 주요내용을 확인

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수행방법, 과업참여자 명단, 과업수행조직의 편성 및 공정계획 등을 포함하여 보고해야 함

#### □ 중간보고

- 중간보고는 감독관과 보고일정을 협의하고 보고서 5부를 제출하여야 하며, 동 보고서에는 착수보고 시 확인한 주요내용에 대한 과업수행방법을 구체화하고, 검토한 내용의 잠정결론 및 세부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해당 사업의 현지 관련기관 협의를 위해 영문으로 작성한 중간보고 요약서 및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 □ 최종보고

- 최종보고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일정을 결정하고 조사연구한 최종 내용을 보고해야 함. 단, 최종보고에서 제안된 수정 내용을 감안하여 최종보고서를 작성해야 함
- 최종보고서는 본 제안요청서의 성과물작성 등을 고려하여 작성하며 20부를 제출하여야 함. 또한 최종보고서, 기타 참고자료 및 재무모델의 전자파일을 함께 제출하여야 함
  - 해당 사업의 현지 관련기관 협의를 위해 영문으로 작성한 최종보고 요약서 및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 □ 수정보고서

- 과업수행자는 최종보고서 제출 후 5개월 이내에 추정수입 및 운영비 추정 등에 사용된 기초자료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본 변경사항을 반영한 수정보고서를 우리 공사의 검토를 받은 후 인쇄하여 10부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 때 수정보고서, 수정 참고자료, 수정 재무모델의 전자파일을 함께 제출하여야 함

## 7. 보안대책

- 과업책임자는 국토교통부보안업무시행세칙 제54조(용역업체에 대한 보안 대책)를 준수하여야 하며, 본 과업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 동 세칙에 의한 보안각서(별첨)를 제출받아 과업착수와 동시에 제출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 자료의 도난, 분실, 기타 손괴 등을 방지하고, 제반 보안사항의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기 위하여 정부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자료 보관함은 별도 비치하되, 대외비와 일반자료보관함으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함
- 과업참여자의 교체 시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유출을 방지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함
- 과업참여자가 교체될 시는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보안규정 이행여부에 대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함
- 최종보고서 등 성과물(확정안 포함)은 감독관과 사전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생산·관리하여야 함
- 과업수행 중 생산된 모든 자료 및 성과품은 우리 공사의 사전 승인 없이 타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없음
-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물을 발간하고자 할 때는 정부 비밀취급인가 업체를 이용하고 보안책임자가 입회하여야 하며, 성과품에는 발간근거 명시(업체명, 인가근거, 참여자, 발간일자) 및 원지, 폐지, 잉여분 회수 등 소각을 철저히 하여야 함
- 과업 내용상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성과품 작성 시에는 참여 인원을 최소화하되, 정규직원에게 한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함
- 과업수행 과정 중 각종 회의 시 배포될 자료에 본 과업내용이 포함될 때는 필요한 최소부문만 생산해야 함
- 과업수행자는 과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내용을 임의로 사용하여 국가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기타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짐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산출된 각종 자료에 대하여 보안 필요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우리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안관계 제 규정을 준수하고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야 함
- 과업내용 중 일부를 외국의 전문기술 및 지식을 활용하거나,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과업을 수행할 경우에도 동일한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성과품은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여야 함

## II. 예정공정표

항목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비고
1. 사업여건분석							
2. 기술타당성 분석							
3. 재무타당성 분석							
4. 법률타당성 분석							
5. 성과품작성							
보고회		착수 보고			중간 보고		최종 보고
과업 진도율	당기	20	20	20	20	20	
	누적	20	40	60	80	100	